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7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일준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7.
3. 회부연월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2022년 8월 4일 시행된 동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 바 있음.

다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이 가능함에도, 현행법에는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 후 5년이 지난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며 추가

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므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중 규제로 볼 수 있음.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2017년 1월 28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규정이 도입됨과 동시에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은 폐지되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삭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삭제)¹⁾.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 ④ (생략)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삭제>
⑥ ~ ⑫ (생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²⁾은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

1)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579호)이 제21대국회에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회부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음.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략)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16종이 있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개요]

제도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대상품목	관리방법	위해도	
안전인증 (4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제품검사 + 공장심사	높음  낮음 	
안전확인 (16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의자,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등	제품검사 (지정 시험·검사기관)		
공급자적합성확인 (14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우산·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등	제품검사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유효기간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만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행법 제22조³⁾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⁴⁾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2024년 기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규 인증 건수는 약 15,000건이고, 인증 유지 건수는 약 75,000건임.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 ⑫ (생략)

4)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8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신규 인증 및 인증 유지 현황]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 취득	인증 유지	신규 취득	인증 유지	신규 취득	인증 유지	신규 취득	인증 유지	신규 취득	인증 유지
완구	7,342	21,944	8,335	29,785	7,526	37,806	7,354	37,704	7,156	38,587
유아용 섬유제품	5,901	21,261	5,196	25,888	5,299	31,756	6,397	30,988	7,181	29,878
학용품	909	2,607	696	3,252	835	4,137	682	3,952	677	3,926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257	569	300	853	189	1,058	144	1,052	145	1,036
유모차	72	281	69	329	49	399	68	329	66	326
유아용 의자	62	175	50	219	47	272	61	270	37	261
유아용 캐리어	54	198	59	250	37	294	34	249	23	218
유아용 침대	34	106	24	125	16	146	34	130	29	146
어린이용 자전거	27	98	21	119	18	137	16	116	19	122
아동용 이단침대	23	53	20	71	21	94	18	94	25	113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27	84	31	113	19	134	5	112	9	103
유아용 삼륜차	22	64	25	88	17	106	20	104	9	103
어린이용 온열팩	1	18	7	25	5	30	22	36	11	46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11	38	7	41	3	48	5	29	3	36
보행기	5	24	0	20	3	27	2	17	2	14
합 계	14,747	47,520	14,840	61,178	14,084	76,444	14,862	75,182	15,392	74,91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⁵⁾,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과 “안전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4.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제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은 생활용품 등 다른 안전관리 대상제품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제도가 도입되면서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이 폐지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은 유효기간만 운영하고 있음.

[효력상실 처분 및 유효기간 규정 유무 현황]

구분	신고 종류	효력상실 처분	유효기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확인신고	○	○ (5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신고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기준의 확인	×	○ (3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이 폐지될 경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시험·검사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과 달리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연맹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 폐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관련 단체 의견 주요 내용]

단체명	의견 주요 내용
중소기업 중앙회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은 생활용품과 비교했을 때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재인증을 받는 비율이 약 2%에 불과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유효기간을 폐지할 경우 혜택받는 대상은 많지 않은 상황임.
한국완구 공업협동조합	- 2022년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제도 도입으로 사후관리가 강화되었으므로 유효기간 폐지 필요 - 기업의 검사 비용 부담완화와 이중규제가 적용되는 어린이 제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유효기간 폐지 필요
한국 소비자원	- 유효기간을 폐지할 경우 사후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법 개정애 앞서 국민의 수용성 확보 및 공감대 형성 선행 필요
한국 소비자연맹	-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효기간 폐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퇴출시킬 수 있는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제도의 도입으로 유효기간의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므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적용받는 제품은 2022년 8월 4일 이후에 신고된 제품으로⁶⁾ 개정안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유효기간을 폐지할 경우 2022년 8월 3일 이전에 신고된 제품은 “안전확인 유효기간”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모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부칙 보완이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64

6) 2022년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제도가 도입될 때 부칙 제2조에서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22년 8월 3일 이전에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없음.

부 칙 <법률 제18819호, 2022. 2. 3.> [시행 2022 8. 4.]
제2조(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